

행정자치부

주 의 요 구

제 목 생산의무대상 회의록 미생산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진주시, 김해시, 밀양시, 함안군, 남해군, 산청군, 함천군

내 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및 녹음기록을 생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법령에서 정한 생산의무에 따라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경상남도 진주시(○○○실)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근거한 위원회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의록 의무작성 대상 회의체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 8월부터 2016년 11월 감사일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4회 개최하였으나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고 심의의결서 등만을 생산·등록한 사실이 있고,

경상남도 김해시(○○과)는 ‘기술자문위원회’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에

근거한 위원회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의록 의무작성 대상 회의체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10일부터 2016년 6월 21일까지 ‘김해시 기술자문위원회’를 18회 개최하였으나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고 심의의결서 등만을 생산·등록한 사실이 있으며,

경상남도 밀양시(○○○○과)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한 위원회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의록 의무작성 대상 회의체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6월 19일부터 2016년 9월 21일까지 ‘밀양시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81회 개최하였으나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고 심의의결서 등만을 생산·등록한 사실이 있고,

경상남도 함안군(○○○○과)은 ‘아동위원회’가 「아동복지법」 제14조에 근거한 위원회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의록 의무작성 대상 회의체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1월 9일부터 2016년 7월 5일까지 ‘아동위원회’를 19회 개최하였으나 회의록을 생산·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경상남도 남해군(○○과)은 ‘인사위원회’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근거한 위원회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의록 의무작성 대상 회의체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남해군 인사위원회’를 226회 개최하였으나 회의록을 생산·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경상남도 산청군(○○○○실)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근거한 위원회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의록 의무작성 대상 회의체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4월 18일부터 2016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7회 개최하였으나 회의록을 생산·등록하지 않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법」 제33

조에 근거한 위원회에 회의록 의무작성 대상 회의체임에도 2012년 11월 6일부터 2016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4회 개최하였으나 회의록을 생산·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경상남도 합천군(○○과)는 ‘인사위원회’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근거한 위원회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의록 의무작성 대상 회의체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6월 7일부터 2016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합천군 인사위원회’를 57회 개최하였으나 회의록은 13회만을 생산·등록하고, 44회는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고 심의의결서 등만을 생산·등록한 사실이 있고,

경상남도 합천군(○○○○과)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운영위원회’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근거한 위원회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의록 의무작성 대상 회의체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4월 18일부터 2016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운영위원회’를 13회 개최하였으나 회의록을 생산·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진주시장, 김해시장, 밀양시장, 함안군수, 남해군수, 산청군수, 합천군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는 회의는 반드시 회의록을 생산하여 전자기록 생산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하시기 바랍니다.